

『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전국 공설봉안시설 평균 사용요금보다 구미시공설송조당 사용요금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고, 2018년 공설송조당 2관의 개관예정임에 따라 사용요금을 현실화하여 질 높은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장사시설 사용료(안 별표 2)
 - 공설송조당 사용요금을 사용료로 일원화
 - 사용료 인상 : 관내 200천원, 관외 700천원
※ 2008년 1월 사용요금 인상(관내 100 → 120, 관외 200 → 300)
 - 부부단실 신규 설치 : 관내 300천원, 관외 1,100천원
- ◆ 구미시공설송조당 사용료 (단위 : 천원)

구 분		관 내			관 외			비 고
		계	사용료	관리비	계	사용료	관리비	
일 반 실	현행	120	80	40	300	220	80	
	개정	200	200		700	700		
	증감	80	120	-40	400	480	-80	
부부단실		300	300		1,100	1,100		신설

※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(2017. 3. 28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2008년 이후 동결해 온 공설송조당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지역의 현황이나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됨.
- 다만 사용료 인상으로 주민들이 부담을 느낄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료가 적정한 지 충분히 검토한 후 심의합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